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7. 3. 28.

사회건설위원회

###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7년 3월 19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7년 3월 22일
- 라. 상정일자 :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7년 3월 26일)

###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송 요 출 )

#### 가.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제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 주 요 내 용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5조)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8조의 제목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로 함(안 제8조)
-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함(안 제12조)

###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 專 門 委 員 이 남 식 )

- 안 제5조 제3항에는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 제4항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는 종전 결산보고로 사업종결을 갈음하던 것을 성과 분석보고까지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중요성을 증대시키며,
- 안 제8조에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 안 제12조에는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한 것 등으로 규정
- 그러나, 안 제8조 제3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위촉 위원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을 “1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나, 기금운용규모가 50억원인 점을 감안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로, 위촉 위원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규모는 49억 1천6백만원입니다.

#### 4. 修正案 要旨

##### 가. 수정이유

기금 운용규모가 50억원인 점을 감안하고,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개정안의 제8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로,
- 같은 항 제2호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을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으로 수정한다.

#### 5. 審査結課 : 修正案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9호
----------	-----------

제안 년월일 : 2007. 03. 26  
제 출 자 : 박정자 위원 외 1인

## 1. 수정이유

기금운용규모가 50억원인 점을 감안하고,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개정안의 제8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로,
- 같은 항 제2호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을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으로 수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개정안의 제8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로,
- 같은 항 제2호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을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으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구의회 <u>의장이 추천한</u> <u>구의원 2인</u></p> <p>3. (생략)</p> <p>④ ~ ⑥ (생략)</p> <p>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u>생활체육담당주사가</u> 한다.</p>	<p>제8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주민생활지원국장이</u> 되고, -----<u>문화체육과장이</u>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구의회 <u>의장이 추천한</u> <u>구의원 1인</u></p> <p>3.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u>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가</u> -----</p>	<p>제8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u>부구청장이</u> 되고, -----<u>주민생활지원국장이</u> -----</p> <p>-----</p> <p>-----</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구의회 <u>의장이 추천한</u> <u>구의원 2인</u></p> <p>3. (개정안과 같음)</p> <p>④ ~ ⑥ (개정안과 같음)</p> <p>⑦ (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제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 (안 제5조제3항)

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4항)

다. 기금 결산 시 운용성과 분석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토록 함 (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2006. 10.12 ~ 10.17) 결과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중 “경륜·경정법시행령”을 “「경륜·경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결산)중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및 분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 운용성과분석 결과 및 복식부기회계 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구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행정관리국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구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을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생활체육담당주사”를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
4. 기금운용계획의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기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성과의 분석 및 기금의 결산을 심의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3조</u> 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3조</u> 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	-----	-----
1.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u>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u> 규정에 의한 수입금	1.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u>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u> 규정에 의한 수입금	1. -----	----- 「경륜·경정법 시행령」 -----	-----
2.~3. (생략)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 ② (생략)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 ③ (생략)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u>출납폐쇄 후 80일</u> 이내에 기금의 결산 및 분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u>출납폐쇄 후 80일</u> 이내에 기금의 결산 및 분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결산) ----- 매 회계연도마다	제7조(기금의 결산) ----- 매 회계연도마다	제7조(기금의 결산) -----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 운용성과분석 결과 및 복식부기회계 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 운용성과분석 결과 및 복식부기회계 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 운용성과분석 결과 및 복식부기회계 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 -----
제8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③위원장은 <u>부구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u>행정관리국장</u>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 략)</p> <p>2. 구의회 <u>구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u></p> <p>3. (생 략)</p> <p>④ ~ ⑥ (생 략)</p> <p>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u>생활체육담당주사</u>가 한다.</p> <p><u>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u>기금의 운용계획</u></p> <p>2. <u>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u></p> <p>3. <u>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u></p> <p>4. <u>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10조(회의) ① (생 략)</p> <p>②정기회에서는 <u>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심의한다.</u></p> <p>③ ~ ⑤ (생 략)</p> <p>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생 략)</p> <p>② 기금운용관은 <u>행정관리국장</u>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u>문화체육과장</u>이 된다.</p> <p>③ (생 략)</p> <p>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u> 중 <u>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u>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주민생활지원국장</u> ----- <u>문화체육과장</u> ----- ----- . 1. (현행과 같음)</p> <p>2. 구의회 <u>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u></p> <p>3.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u>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u> ----- .</p> <p><u>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u>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u></p> <p>2. <u>기금운용의 성과분석</u></p> <p>3. <u>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u></p> <p>4. <u>기금운용계획의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u></p> <p>5. <u>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정기회에서는 <u>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 운용성과의 분석 및 기금의 결산을 심의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문화체육과장</u> ----- ----- <u>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 -----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u>」 ----- ----- .</p>